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7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4년 04월 03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04월 08일

###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

### 3.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4조)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나.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9조제3항)

- 위촉직 위원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

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9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고, 회의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나.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개요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전문적인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심의회는 당연직 내부위원(공무원 4명)과 위촉직 외부위원(시의원 4명,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6명 이내)으로 구성되며, 학술용역 상정 안건의 전문 분야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 < 심의회 구성 현황 >

- 임기 : 2024.4.18. ~ 2026.4.17.
- 위원 : 총 41명 ※ 여성위원 20명(54%)
  - 내부위원(4명)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37명) : 시의원(4명),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33명)
  - 분야별 위원 구성

구분	계	행정재정	환경	건설안전	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경제일자리	이동청소년 교육양성 평생교육	보건 의료 복지
위원	33	5	7	3	3	2	3	3	2	3	2

- 동 회의는 정기(9월) 및 수시(3월~10월, 신청 건수에 따라 실시)로 운영되며,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가 필요한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개최됨.
- 참고로 서울시는 2023년에 도입된 사전검토회를 통해 1차적으로 학술용역의 과제 수행 방식 및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 심의회는 사전검토회에서 학술용역으로 결정된 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2023년 사전검토회 및 심의회 운영 결과 >

#### ○ 사전검토회 운영 결과

구분	합계	연구원 자체연구	학술용역	부서 자체수행	보류*
신청	129	62	67	-	-
결정	131	39	50	30	12*

\* 보류 : 서울연구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부재로 수행 불가, 추후 학술용역 추진 시 별도의 사전검토 생략 후 신청 가능

####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결과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심의실적	46건	55건*	9건
부적정 결정 건	10건	10건	-
부적정 비율(%)	21.7%	18.2%	△3.5%

\* 심의실적(55) = 사전검토회 학술용역 결정 건(50) - 사전검토 후 학술용역 미신청 건(4) + 재심의 건(9)

## 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 (1) 외부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9조제3항)

- 안 제9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의회 회의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 수가 전체 위원 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141호, 2023.7.25.).

관련 자치법규	세부 권고사항
서울특별시 학술융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촉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심의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도 개최 실적(정기1회, 수시4회)을 살펴보면, 위촉위원의 참석 비율이 매우 낮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 2023년 심의회 위원구성 현황 >

	4월(수시)	6월(수시)	8월(수시)	9월(정기)	10월(수시)
당연직	4명	4명	4명	4명	4명
위촉직	3명	4명	3명	7명	6명
위촉직 비율	43%	50%	43%	64%	60%

- 따라서 안 제9조제3항은 일관성 있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회의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양성평등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1)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음2).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sup>3)</sup>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도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임.
-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참고로 위촉위원 성별기준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는 그 비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됨.

---

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양성평등담당관-19120(2023.11.20.) (창의행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안내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안 제3조 ~ 제19조)

-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상 조문 구성의 오류를 치유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조례가 구성 절차에 맞는 조문 체계를 갖춤으로써 타 자치법규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관련 내용> - 위원회 규정방식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송선욱	02-2180-8064